



노사관계부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2021년 12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한 사실 자료



사진 제공: 밥 검퍼트(Bob Gumpert)

“Cal/OSHA”로 더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 및 보건 부서는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료를 읽고 귀하가 본인의 기본 권리를 이해하고 귀하의 직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에게 안전한 작업 실행 교육 및 지침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및 고용주가 귀하와 귀하의 동료와 원활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지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이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된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볼 수 있는지 고지해야 합니다.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의 필수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소 인식 방법을 배우고, 발견한 위험요소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험요소의 보고를 장려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집행

귀하는 캘리포니아 작업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필수 요건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주정부 기관인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에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은 귀하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의 이름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귀하의 직장 위치 지역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관할 사무소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여기에 있는 쿼알(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홈페이지(www.dir.ca.gov/dosh)에서 "작업장 안전 불만제기"를 누르세요.
- 전화로 제출하려면, 귀하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집행관할 사무소**(www.dir.ca.gov/dosh/DistrictOffices.htm)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로 전화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위험요소 조사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작업장의 주소와 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
- 작업장에 위험요소가 있는 위치. 예: "12번 방에 있는 선반절단기."
- 위험한 조작 또는 상태가 발생하는 때. 예: "우리는 매주 금요일오후에 이 솔벤트를 사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귀하가 법적 필수 요건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를 진술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지게차의 고장난브레이크" 또는 "낙상 방지 장치 없음"

조사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은 위험요소에 대한 불만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때때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이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주가 위험요소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검사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이 현장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관은 사전 통지 없이 도착합니다.

- 도착하자마자, 검사관은 검사의 목적과 수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주 및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개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 검사관은 현장을 돌아보며, 위험요소를 관찰하고, 직원과 관리자를 면담하고, 서류작성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측정과 사진촬영을 합니다.
- 고용주의 대리인과 직원이 위임한 대리인은 검사관이 돌아보는 데 동행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고 기밀이 보장되는 면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검사관은 필요한 경우 통역을 주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당신은 검사관과 따로 연락하여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검사관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관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방문할 수 있으며, 특히 검사관의 처음 방문에 참석할 수 없었던 직원과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검사 후: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가 검사 중에 수집하는 정보로 고용주가 보건 및 안전 필수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고용주에게 하나 또는 여럿의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에게만 소환장을 발행합니다. 불만을 제기할 때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다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은 귀하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까지 위반 사항을 "경감" 또는 시정해야 합니다. 귀하는 항소 절차에 당사자로 추가되기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주가 제기한 항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이 소환장을 발행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반드시 소환장 사본, 위험요소가 시정된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출된 항소문이 있다면 그 사본을 작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에 전화하여 소환장을 포함한 검사 결과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귀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를 위험한 작업 수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인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인 경우에 그러합니다:

1.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보건 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그러한 위반이 귀하나 귀하의 동료에게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귀하의 작업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기 전에, 귀하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리자에게 위험요소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위험 요소가 시정되는 경우나 다른 안전한 작업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설명하십시오.
- 귀하가 생각하기에 보건 또는 안전 규정 위반이라 생각된다고 말하십시오.
- 노동조합 간부가 있다면 그에게 연락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귀하가 고용주에게 위험요소를 보고하거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에게 위협, 해고, 강등, 또는 정직을 처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귀하를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귀하는 노동기준집행부서(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은 귀하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고 귀하가 직업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귀하는 보복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사무소 목록을 보고 귀하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노동청 홈페이지**(www.dir.ca.gov/dlse)에서 "Locations, Contacts, and Hours of Operation(위치, 연락처, 근무시간)"을 누릅니다. 전화: 1-833-LCO-INFO(833-526-4636).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직원의 권리

귀하는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서면 정보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 노출 기록 및 의료 기록: 자신이 독성 물질과 유해한 물리적 작용제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노출 기록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도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노출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합당한 시간, 장소 및 방식으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출 기록에는 작업장의 환경 관찰기록, 생물학적 관찰기록 결과, 그리고 안전 수치 업무표가 포함됩니다. 귀하이 의료 기록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진료 설문지 및 병력, 검사 결과, 진료 소견 및 진단, 치료 및 처방에 대한 설명, 응급 처치 보고서, 그리고 직원의 진료상 증상 호소가 포함됩니다.

안전 수치 업무표: 이 업무표에는 작업장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업무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며 귀하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시 볼 수 있도록 아무런 장애가 없는 한 전자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의 기록: 귀하는 다음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의 기록일지(서식 300);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의 연간 요약(서식 300A); 그리고 귀하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설명하는 부상 및 질병 사고 보고서(서식 301).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고용주는 귀하에게 다음 업무일이 끝날 때까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계획 문서: 귀하는 유해성 공지 전달, 호흡기 보호, 그리고 허가가 필요한 밀폐 공간 출입 절차와 같은 특정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필수 요건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의 서면 계획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제공: 밥 검퍼트(Bob Gumpert)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 (Cal/OSHA) 정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전 및 보건상 위험요소에 대해 질문이 있는 근로자는 (833) 579-0927으로 Cal/OSHA 콜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규정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영역에서 고용주의 지속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책임:** 프로그램 구현에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 또는 직책.
- **규정 준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관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으로 작성된 체계.
- **의사소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체계. 여기에는 회의, 교육, 게시물, 서신, 노사 안전 및 보건 위원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험요소를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이용하는 고용주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규정에 명시된 특정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험요소의 평가:** 정기 검사를 포함하여 작업장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 **사고 또는 노출 조사:** 산업 재해 및 질병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

- **위험요소의 시정:**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 조건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 **훈련 및 교육:** 일반적인 안전한 작업 관행과 각 배정된 작업에 특정된 위험요소에 대해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 **직원의 자료 이용:** 직원(또는 지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 **기록 보관:** 고용주가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취한 단계에 대한 문서 기록.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에 대한 특정 필수 요건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장, **제3203조**에 있습니다. 또는, **노사 관계부 홈페이지**(www.dir.ca.gov)에서 "Laws & Regulations(법률 및 규정)" 링크,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Title 8(캘리포니아 규정집 - 제 8장)" 링크, 그리고 "Cal/OSHA(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 링크에서 "3203"을 검색합니다.

고용주가 실효성 있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의 **교육용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Cal/OSHA)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Educational Materials(교육용 자료)"에서 "Cal/OSHA Publications(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및 보건국 출판물)"로 링크합니다.

사진 제공: 밥 검퍼트(Bob Gumpert)



귀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저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니며, 저희는 귀하의 이민 신분을 묻거나 보고하지 않습니다.

